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0월 8일

○ 회부일자 : 1993년 10월 8일

3. 제 안 이 유

현행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방법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 (일시납부가 곤란한 경우)이 불합리 함에 따라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와 분할납부 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4. 주 요 골 자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일시납부시 대금의 1할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잔액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완납하도록 함.

○ 중요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액 분할납부시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에 균등하게 분할납부하도록 함.

○ 이자율이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율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을 적용함.

5. 검토 의견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중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조건이 불합리하여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의 일시납부·분할납부 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3624호, 90.11. 6.)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과 교환차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는 계약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완납하도록 하였으며,

일시납부가 곤란한 중요재산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결정고시한 계약체결 당시의 시중은행 일반여신금리에 의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균등 분할납부 할 수 있게 하고,

이자율은 령 제100조 제2항에서 정한 연 5푼 내지 2할의 범위내에서 하한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하한율인 5푼을 적용하고, 상한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상한율인 2할을 적용토록한 것 등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분할납부기간의 재량권 행사에 따른 경쟁의 공평성 침해 요인에 대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6. 개정조례안 및 참고자료 : 별첨